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0. 6. 8. 개정 판 (시행 2020. 6. 1.) → 2024. 4. 1. 개정 판 (시행 2024. 3. 1.)

바뀜 3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90/compare?from=993&to=1530>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9:01:57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 특히 체류·학업·생활·취업에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1>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u>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u>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삭제 2024-04-01>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 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 특히 체류·학업·생활·취업에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중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를 "3. <삭제 2024-04-01>"로 한다.

제6조 중 "1.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를 "1.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 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